

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정정 공고

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(조례) 공포문 중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파 주 시 장 김 경 일 인

2025년 11월 11일

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기 준	정 정
제6조(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	제6조(위촉 해제)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기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	3. ----- - 제12조 ----- -----

제18조(아동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
2. (생략)

제18조(아동위원의 위촉 해제) ----

-----.

1. 제6조제1호-----

2. (현행과 같음)